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1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홍기원·이병진·박희승

권칠승 • 민형배 • 이정문

김준형 • 조승래 • 정을호

허 영・정준호・윤호중

이연희 · 조정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출생해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따르기때문에 만약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행법 제96조에 의해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함.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보훈처 등의 심사로 독립 유공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독립 유공자의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 해당 독립유공자의 후 손임이 인정되어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절차 에 의해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독립유공자의 자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는 국적취득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는 때에는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할 수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 ⑥ (생 략)	창설 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제1항에 따라 성과 본을 창
	설하는 국적취득자가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국
	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성
	(姓)과 본(本)을 창설하는 때에
	는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u>성(姓)과 본(本)을 사용할 수</u>
	있다.